



## 희망의 사다리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2015년 6월호로써 창간 59주년 및 지령 7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9년 동안 月刊『考試界』를 애독해 주셨던 수많은 독자들, 좋은 글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혜를 주셨던 여러 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月刊『考試界』가 창간될 무렵인 1950년대 후반의 어려운 경제적·문화적 상황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행정부·사법부의 핵심 동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창간 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간 후 59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여러 독자들의 애정과 많은 법조인, 나아가 여러 집필자님들께서 양질의 옥고를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어딜가나 경제사정이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출판계 및 잡지계는 더욱더 그 사정이 심합니다. 특히 月刊『考試界』와 같은 전문수험잡지는 독자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 숫자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잡지 자체의 수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사물잡지나 오락물잡지에 비하여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문수험잡지를 지난 59년 동안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하여 왔다는 점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고 격려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月刊『考試界』의 창간 후 지난 59년 동안 月刊 法律雜誌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수 법률학술지가 없었던 학문 초창기의 어려운 사회여건 하에서 그 공백을 메워 법학전문잡지로서, 그리고 법학계의 주요쟁점이 다루어지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호마다 고시수험생들의 소리를 담아 시험 주관처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올바른 제도개혁을 위한 정론지로서의 책무도 수행하여 왔으며,

## 정상훈

- 月刊『考試界』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시험에 관한 새로운 정보 및 자료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나 또는 현재 학계의 핵심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月刊『考試界』가 충실하게 수행해 온 이러한 역할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전통적인 고시제도가 그 존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이라는 양 제도의 틀 속에서도 한 쪽에 매몰되지 않고 양 쪽 모두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도 많았던 로스쿨 제도가 들어와 시행된지도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고, 금년에 제4회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그 변호사들이 법조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도입 초기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나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은 그 본질적인 폐해나 한계로 인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 압박에 대한 일시적 국면 타개용으로 제안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 결정된 성격이 강하고, 그 배경에는 철저한 계획없이 로스쿨을 도입한 주체들에 의한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하나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상황논리가 있었습니다.

재벌가 등에서 쓰이던 '세습'이라는 용어가 최근 법조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분석에 의하면 2009년부터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자녀는 총 69명인데 비하여, 로스쿨 1~3기까지 합격자 중 법조인 자녀는 총 71명으로 사법시험의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연령화와 스카이(SKY)대 출신의 쏠림현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유능

한 법률실무가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도 심각하게 퇴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서울대학교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23~25세가 32.6%로 가장 많았고, 86.4%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만 패스하면 되고 성적이나 실력의 상대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로펌의 변호사 채용 때 부모님의 후광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자자합니다. 실제로 '현대판 음서제도'가 부활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변호사로 입사했던 사람들이 실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로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기에 변호사시험에서 조차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합격하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주된 이유는 변호사시험 성적,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법원·검찰·대형 로펌의 채용과정이 모두 비밀주의·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을 논의에 부쳐 사법시험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시험의 존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정성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지난 59년간 창간 이래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月刊『考試界』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보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月刊『考試界』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애독자 여러분의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